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경제안보 분석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과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미 에너지정보청(EIA),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지속 전망
- 미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환급 명령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복합 쇼크 위기 고조
- 호르무즈 해협 위기 여파로 납사 공급 차질...韓·日 석유화학 산업 부담 가중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I. 경제안보 분석

김단비 전문관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01

1.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배경
2.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3. 최근 중국의 주요 법적 조치 및 집행 사례
4. 시사점

II. 경제안보 분석

김수연 전문관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과 시사점

10

1. 배경
2.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필요성과 과제
3. 주요국 정책 동향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III. 경제안보 현안

최용호 전문관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

16

1. 배경
2. 美 무역법 301조의 주요 내용
3.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4.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5. 분석 및 평가

I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미 에너지정보청(EIA),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지속 전망
- 미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환급 명령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복합 쇼크 위기 고조
- 호르무즈 해협 위기 여파로 납사 공급 차질...韓·日 석유화학 산업 부담 가중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요약

■ (개요) 미·중 전략 경쟁이 기술·통상·공급망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관련 법안을 재편

- ▶ (지정학적 변화 대응)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경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확대
 - (국가안보조항 강화) 2020년 이후 제정 및 개정된 외교·통상·산업 관련 다수 법안*에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권리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 수출통제법(2020), 대외관계법(2023), 대외무역법(2026) 대외무역법(2026) 등
 - (전략물자 관리 체계 정비) 수출통제법 제정(2020)을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마련한 이후, 희토류 등 자국이 공급망 내 우위를 보유한 전략 광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
- ▶ (집행 추이)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집행 빈도와 제재의 실효성도 확대
 - (집행 빈도 확대) 제정된 법안에 상응하는 수출통제 리스트 및 제재 리스트를 마련하고, 대외관계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리스트 확대
 - *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中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포함 업체는 2025년 76개로 대폭 확대
 - (실효성 확대) 특정 첨단 또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거래를 강도 높게 통제하는 표적 제재 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지정학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 (평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 정책의 제도화 경쟁도 심화

- ▶ (미국식 규제 모델의 수용) 중국은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나 역외 적용,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개념을 자국 법제에 적극 수용하여 맞대응
- ▶ (정교화된 보복 방식 적용) 최근 조치는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과 수출통제를 결합하여 상대국 산업에 실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화

■ (시사점) 중국 정부의 경제안보 관련 법안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적용의 외연 확장 및 집행력 제고 동향 주시

- ▶ (모니터링 강화) 중국의 집행 동향 고려시, 미·중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일지라도, 개별 기업이나 품목에 대한 표적 제재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
 - (이중규제 리스크) 향후 美·中 규제 충돌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양자택일에 처하는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비 필요

1.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배경

■ (배경)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관련 법안을 재편하고, 제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

- ▶ 기술·통상·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중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경제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 (미국의 對中 제재)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등을 토대로, 중국 화웨이 제재(2020년),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2022년~) 등을 발표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망을 제약
 - (중국의 대응)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제도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수출통제법(2020), 반외국제재법(2021) 등 제도화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 조치 발표
- ▶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중국 경제안보 관련 법제 정비 동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실질적인 시행 사례를 조망
 - 미·중 경쟁 확대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 마련이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및 활용 사례를 분석
 - 향후 미·중 경쟁 환경에서 해당 법률이 활용될 가능성과 우리 기업 및 정책 환경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 중국은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외교·통상·산업정책을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지정학적 변화 대응) 2020년 이후 제정 및 개정된 외교·통상·산업 관련 다수 법안에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권리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2021년 시행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2021)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방법(2021) ▲반외국제재법(2021) 등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대응한 국내기업 지원책과 반격 조치 권한 명시에 중점
 - * 미국은 화웨이社 제재('20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수출통제 강화('22년~) 발표
 - 이후, 반간첩법(2023)과 대외관계법(2023), 대외무역법(2026) 등 대외관계 및 통상 관련 기본법에서 국가안보 조항을 강화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 동향]

일자	법/제도명	주요 내용
2020.12월 시행	<수출통제법>	- 국가안보·발전이익 침해 시, 희토류 등 이중용도품목 수출 제한 가능 ※ 美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유사
2021.1월 시행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방법>	- 부당한 외국법에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복 지원 가능
2021.1월 시행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방법>	- 중국의 첨단기술 및 방산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그린필드 투자, 인수합병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 심사 규정 구체화 ※ 美 해외투자심사 강화법(FIRRMA)와 유사
2021.6월 시행	<반외국제재법>	- 여타국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동 법에 근거 반격 가능 ※ 동 법을 원용하여 반제재명단 관리
2023.7월 시행	<반간첩법(개정)>	- 간첩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조치 강화 - 간첩 행위 정보의 절취, 정탐, 매수 등이 포함되고, 유출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국가기밀에서 국가이익 관련 정보 등으로 확대
2023.7월 시행	<대외관계법>	- 중국의 첫 대외관계 기본법 -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반격과 제한 조치 시행 권리 명시 -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법률상 책임 대상으로 명시
2026.3월 시행	<대외무역법(개정)>	- 상응 조치 조항 신설로 보복 권한의 법제화 - 국가발전 이익을 안보 사유로 포함 - 무역조정지원 제도 도입

자료: 법안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 **(수출통제법)** 2020년 제정된 수출통제법은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률
 - (주요 내용) 이중용도 물품, 군수품, 핵 관련 물품 등을 통제 대상에 포함, 필요 시 임시 통제 품목 지정 가능, 특정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 조치 가능
 - (특징) 중국은 동법을 근거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면서 해당 조치를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로 전략적으로 활용**
 - ▶ **(반외국제재법)**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 (주요 내용) 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중국 내 거래 금지, 입국 제한 등 조치 가능
 - (특징) 해당 법률은 외국 정부뿐 아니라 제재에 협조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deterrence) 성격을 포함
- * 2025년 5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美 화웨이 Ascend 칩 사용금지 지침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동 지침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협조하는 자는 반외국제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적 책임 부과 경고

-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대외무역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국가의 통상정책 방향과 권한 구조를 규정
 - (개요) 2026년 개정안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강화**
 - (주요 내용) ▲국가 발전이익을 수출통제 및 무역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명문화, ▲특정 국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 가능 ▲무역 분쟁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 조사 제도 도입
 - (특징) 무역 정책을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발전 수단으로 규정

■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한 국가 지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집행 수단 확대

- ▶ (전략물자 관리 체계 정비) 수출통제법 제정(2020)을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마련한 이후,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
 - (공급망 관리 강화)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비축 제도 도입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집행 수단 확대) 관련 법령과 하위 규범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 집행 수단을 구체화하는 추세이며, **역외적용 가능성의 명문화** 등 미국 수출통제 제도와 유사한 요소를 자국 제도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법적 집행 수단을 지속 확대

[중국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동향]

일자	법/제도명	주요 내용
2024.10월 시행	<희토류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채광·제련·생산에서 제품 유통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 - 희토류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
2024.12월 시행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中 수출통제법에 따라 제정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업무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및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외교, 세관 등 관련 부처와 이중용도 품목 수출대상 국가 및 지역을 평가하여 리스크 등급 설정, 이에 상응하는 통제 조치 가능
2025.7월 시행	<광물자원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자원 관리 원칙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 - 전략광물자원(戰略性鑛產資源)에 대한 국가지원 및 비축 의무 조항을 최초 입법화

자료: 법안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최근 중국의 주요 법적 조치 및 집행 사례

■ (법안 근거 집행 확대) 과거의 비공식적 조치에서 탈피하여, 자국 법령에 기반한 정당성 확보와 함께 대외 정책의 집행력을 체계적으로 강화

▶ 반외국제재법(2021)과 수출통제법(2020) 등을 법적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대외 압박에 대한 실질적 보복 조치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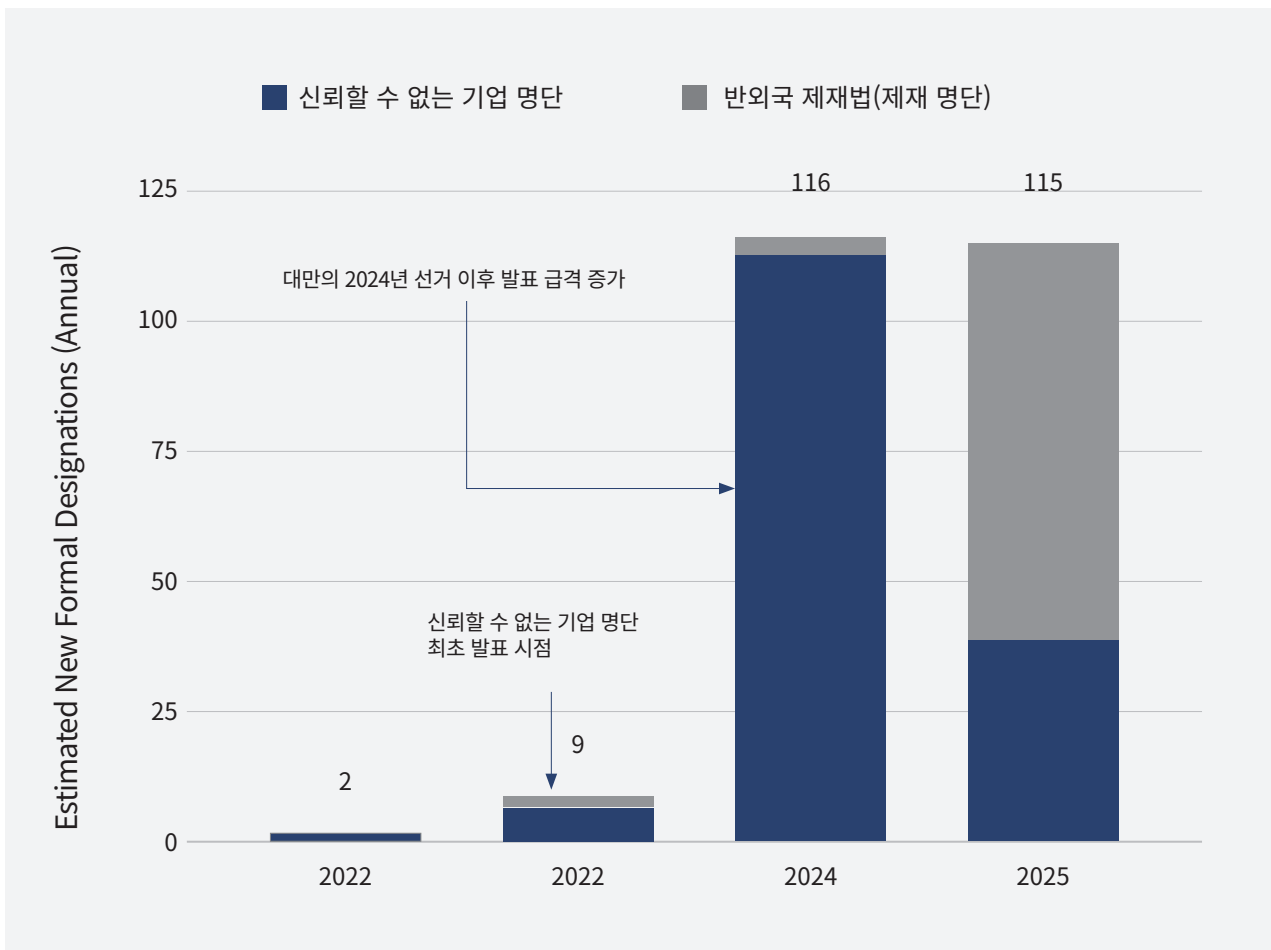
- (통제·제재 리스트의 탄력적 운용) 제정된 법안에 상응하는 수출통제 리스트 및 제재 리스트를 구축하고, 대외 환경 변화 및 자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대상을 상시 추가·조정하는 등 규제 적용의 외연을 확장

- (지정 추이) 최근 ▲수출통제 대상 품목 확대, ▲제재 대상 기업 수 증가 등 법안의 집행 빈도가 최근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지정 추이) 2023년 2개, 2024년 3개, 2025년 76개

※ (반제재 명단 지정 추이) 2022년 2개, 2023년 7개, 2024년 113개, 2025년 39개

[중국의 공식적 제재 빈도 추이(2022년-2025년)]



자료: WilmerHale(2026.1) 재인용

[중국의 주요 경제안보 관련 법적 규제 수단]

법/제도명	주요 내용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 목록」 ※ 수출통제법(2020)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체계화) 수출통제법에 근거하여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핵심 광물과 관련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상응 조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대만 관련 이슈 등 자국 정책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대응 조치에 동 목록을 통해 실질적 제재 조치 집행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2020년 시행, 관리기관은 中 상무부로 중국의 국가발전, 안보, 주권 이익을 침해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 (주요 조치) 중국 관련 수출입 및 투자 제한, 벌금 및 기타 행정 제재, 관련 개인의 비자·체류 제한 등 - (특징) 기업 대상 지정, 지정 전 조사 단계에서도 기업 평판 및 사업에 상당한 영향 발생 - (지정 추이) 2023년 2개, 2024년 3개, 2025년 76개 - (사례) 2023년 2월 처음으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지정, 202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반제재 명단」 ※ 반외국 제재법(2021)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반외국제재법에 근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입안·집행하거나 지원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中 외교부 지정 - (제재 내용) 대상자의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 등이 포함 - (지정 추이) 2022년 2개, 2023년 7개, 2024년 113개, 2025년 39개 - (특징) 주로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한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 실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 - (전략적 의도) 지정된 기업들이 중국과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적어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u>대만 문제 등 핵심 이익에 관여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불쾌감 표시와 경고 목적</u> - (사례)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군사 장비 및 기술을 판매한 미국 기업과 관련 개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 발표(2025.12)

자료: 법안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전략적 표적 제재) 특정 국가를 겨냥하여 첨단·전략물자의 거래를 강도 높게 통제하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 방식을 확대하고, 이를 지정학적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운용

- ▶ (對미국 상응 조치 및 협상 레버리지 확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의 수출 통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에 주력
 - (수출통제 맞대응)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24.12.)에 즉각 대응하여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맞대응('24.12)
 - (핵심광물 공급망 무기화) 미·중 무역 협상 국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필수 소재를 수출통제 품목으로 신규 지정(55-58호 공고)하며 협상력 제고 도모
 - (제도적 외연 확장) 기존 희토류 통제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수출통제 제도의 역외 적용 및 기술 통제를 명문화하여 수출통제 조치의 집행력 및 실효성 제고(61, 62호)

[최근 중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통제 조치]

	대미 수출통제 조치('24.12.3)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치('25.10.9)
배경	미국의 차별적 조치(중국 반도체 기업 대상 제재 조치)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통제 대상 및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군 사용자 또는 군사 목적으로의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②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소재 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원칙적 수출금지 ③ 흑연 관련 제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55호) 「초경재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 ② (제56호) 「특정 희토류 장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 ③ (제57호) 「일부 중·중(中重)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 ④ (제58호) 「리튬이온전지 및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 ⑤ (제61호) 「국외 관련 희토류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 ⑥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결정」
조치 특징	- 조치 발표 이후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소재 품목에 대한 對미국 수출통제 시행	- 희토류, 흑연 등 첨단산업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수위를 대폭 상향 - 미국과 협의를 통해 동 조치를 1년 유예

자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對일본 주요 조치)** 일본의 대만 문제 관련 발언 등 외교적 현안 발생시,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논리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방식 전개
 - **(조치의 정당성 강조)** 규제 대상을 특정 산업군이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조치가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 및 안보 수호를 위한 합법적 행위임을 대외적으로 강조
 - **(전략적 불확실성 유지)** 군사력 증강 기여도나 최종사용자(End-user)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실질 집행 정보의 불확실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방식 적용
 - **(제3국 역외적용)** 중국 외 제3국(기업·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재 대상국과 제3국 간 거래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기제로 활용

[최근 중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통제 조치]

	대일 수출통제 조치('26.1.6)	대일 수출통제 조치('26.2.24)
배경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발언(25.11.7.)한 이후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 고조	
조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본 군사 사용자 또는 군용,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타 최종사용자와 용도에 대해 모든 이중용도 품목(846개)의 수출금지 ②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기업·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에 이전하는 경우 법적 책임 부과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본의 군수 기관 및 기업(40개社)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20개社) 및 허가 심사 절차 강화(20개社) ② 미츠비시 중공업 계열사(조선, 엔진 등), IHI 계열사 등 일본의 중공업 및 방산 분야 기업 제재

	대일 수출통제 조치('26.1.6)	대일 수출통제 조치('26.2.24)
조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등 근거 -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활용하여,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 및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 - ▲ 통제 품목이 광범위하고, ▲ 제3국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명시하고 ▲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바, 중측의 실질 조치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多 	

자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 (전략적 제도화 경쟁) 중국의 전방위적 법제 정비는 미·중 간 기술·통상 경쟁이 경제안보 정책의 제도화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 ▶ (미국식 규제 모델의 수용) 중국은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나 역외적용,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등 기존 서방의 규제 개념을 자국 법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임
 - 과거 중국의 보복 조치를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던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자국 법령을 토대로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 등 논리적 기반을 강화
- ▶ (정교화된 보복 방식 적용) 최근 중국의 대응 방식은 자국의 공급망 영향력과 첨단 소재 수출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대국 산업에 실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화
 - (선별적 집행 강화) 법령을 근거로 상대국의 핵심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공급망에 선별적이고 실질적인 충격을 주는 표적 제재 방식을 강화
- ▶ (국가안보 관련 조항의 제도화) '발전과 안보의 조화'라는 국가 전략 기조가 하위 법령 및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력으로 전환되며 제도적 안착 단계에 진입
 - (외교적 수단화) 법적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수출통제 및 제재 리스트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상시화

■ (시사점) 중국 정부의 경제안보 관련 법안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적용의 외연 확장 및 집행력 제고 동향 주시

- ▶ (전략적 모니터링 강화) 중국 내 법제 정비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논리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 중국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 데이터 및 정보 접근 제한, ▲ 전략물자 수출 규제 확대, ▲ 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 등 중국궤 경제안보 정책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 주시
- ▶ (대응 전략 강화) 주요국 간 경제안보 정책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
 - (표적제재 확대 가능성) 중국의 최근 제재 조치 고려시 미·중 갈등의 표면적 소강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기업이나 품목을 겨냥한 표적 제재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
 - (이중규제 리스크) 특히 중국의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중국산 원자재 및 시장 접근성이 필수적인 기업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시 규제 노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 商务部(2026. 1. 6.). “商务部公告2026年第1号 关于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的公告”.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8990fedae8fa462eb02cc9bae5034e91.html
- 商务部(2026. 1. 6.). “商务部新闻发言人就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答记者问.”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th/art/2026/art_1f25cb39adfa4561b34b4ea46d2bcee7.html
- 商务部(2026. 1. 7.). “商务部公告2026年第2号 公布对原产于日本的进口二氯二氢硅发起反倾销立案调查.”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a7609f764b354909892ae21c0d301cb7.html
- 商务部, 海关总署(2025.10.9.), “公布对锂电池和人造石墨负极材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公告2025年 第58号.
- 商务部, 海关总署(2025.10.9.), “公布对部分中重稀土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公告2025年 第57号.
- 商务部 海关总署(2025.10.9.), “公布对部分稀土设备和原辅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公告2025年 第56号.
- 商务部 海关总署(2025.10.09.), “公布对超硬材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公告2025年 第55号.
- 商务部(2025.10.09.), “公布对境外相关稀土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公告2025 第61号.
- 商务部(2025.10.09.), “公布对稀土相关技术实施出口管制的决定”, 公告2025 第62号.
- WilmerHale(26.1.27), China Tightens Sanctions and Trade Restrictions Amid US China Trade Ceasefire
- Giulia Interesse(26.3.18), China’s Revised Foreign Trade Law Is Now in Effect: What Businesses Need to Know
- 중국 상무부 수출입관리 홈페이지, <https://exportcontrol.mofcom.gov.cn/>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http://www.gov.cn>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과 시사점

김수연 전문관

요약

■ (배경) IBM, 구글 등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개발 및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

- ▶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제기 및 보안 환경 변화 심화
 - 장기적 데이터 보호 요구 증가와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미래 위협 대응 필요성 확대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중장기 보안 한계 인식 확산
- ▶ 이에 따라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양자내성암호 중심의 연구개발 및 적용 논의 확산

■ (필요성·한계) 양자컴퓨팅 환경 도래에 대비한 선제적 암호체계 전환 필요성 증대 및 국제표준화를 통한 적용 기준 구체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 ▶ 그러나 양자내성암호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 및 산업적 부담, 정책 기반 미비 등 복합적 한계 존재

■ (정책 동향) 주요국은 양자내성암호 표준 제정, 정책 지침, 전환 로드맵 등을 추진하며 단계별 이행 체계를 구축

- ▶ (미국) 표준 제정과 행정 지침을 기반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양자내성암호 전환 정책 구체화 및 공공부문 중심 이행 기반 마련
- ▶ (EU) 집행위원회 권고와 협력체계를 통해 회원국 간 조율된 양자내성암호 전환 로드맵 제시 및 공동 대응 기반 강화
- ▶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환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 제시 및 장기적 전환 전략 추진
- ▶ (중국) 국가 차원의 양자기술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및 산업 적용 기반 확보 추진
- ▶ (한국) 정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시범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공공 및 산업 분야 적용 기반 단계적 확대

■ (시사점) 양자컴퓨팅 발전과 국제 정책·표준 동향 고려 시,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장기적·단기적 이행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로 추진되는 흐름

- ▶ 국제적으로 전환을 위한 기준과 방향이 구체화 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부합하는 전환 체계 마련 필요

1. 배경

■ IBM, 구글 등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개발 및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

* 양자역학의 중첩(superposition), 얽힘(entanglement) 등 특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로,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 대비 높은 계산 효율 구현 가능

- ▶ 양자컴퓨터 기술은 기존 컴퓨터 대비 특정 계산(소인수분해,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에서 높은 효율성과 처리 속도 확보 가능
 - 신약 개발, 신소재 탐색, 금융 분석, 기후 모델링 등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과학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확대

■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제기 및 보안 환경 변화 심화

- ▶ 디지털 인증, 금융거래, 통신 등 인프라 전반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체계(RSA, ECC 등)는 소인수분해 및 이산로그 문제의 계산 난이도에 기반하여 안정성을 확보
 - 양자컴퓨터는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암호체계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 제기

* (Shor 알고리즘) 1994년 Peter Shor가 제안한 양자 알고리즘으로 소인수분해 및 이산로그 계산을 효율화하여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기술

■ 장기적 데이터 보호 요구 증가와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미래 위협 대응 필요성 확대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중장기 보안 한계 인식 확산

- ▶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한 후 향후 양자컴퓨터로 복호화하는 ‘Harvest Now, Decrypt Later(HNDL)’ 위협이 제기되며 장기 데이터 보안 리스크 확대
 - 외교·국방·금융 등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를 중심으로 현시점 암호화 방식이 미래 보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

■ 이에 따라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양자내성암호(PQC*) 중심의 연구개발 및 적용 논의 확산

* Post-Quantum Cryptography

- ▶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암호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자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
 - 격자 기반(lattice-based), 해시 기반(hash-based) 등 양자 알고리즘으로도 효율적 해독이 어려운 수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 암호 대비 데이터 크기·계산량 증가

2.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필요성과 과제

■ 양자컴퓨팅 환경 도래에 대비한 선제적 암호체계 전환 필요성 증대 및 국제표준화를 통한 적용 기준 구체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 ▶ 기존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 소요
 - 암호체계는 인증, 통신,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어 전환 시 영향 범위가 크며 단계적·체계적 준비 필요
- ▶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및 적용 방식에 대한 국제표준 논의가 진전되면서 실제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준과 방향이 점차 명확화
 -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 간 차세대 암호기술 확보와 표준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며 산업 및 공급망 전반에 영향 확대

■ 그러나 양자내성암호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 및 산업적 부담, 정책 기반 미비 등 복합적 한계 존재

- ▶ 양자내성암호는 기존 암호 대비 필요한 데이터 크기와 계산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 및 네트워크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
 -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 시스템 교체 비용, 중소기업 대응 역량 부족, 세부 가이드라인 및 인증체계 미비 등으로 인한 전환 과정에서 부담 요인 존재

3. 주요국 정책 동향

■ (미국) 표준 제정과 행정 지침을 기반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양자내성암호 전환 정책 구체화 및 공공부문 중심 이행 기반 마련

- ▶ 백악관, 「양자컴퓨팅 리더십 강화 및 취약 암호체계 위험 대응에 관한 대통령 국가안보각서*('22년)」를 통해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 취약성 대응 필요성 제기

* Memorandum on Promot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Quantum Computing While Mitigating Risks to Vulnerable Cryptographic Systems (NSM-10)

- 또한 관리예산실(OMB)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지침*('22년)」을 통해 연방기관의 암호 자산 식별, 전환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전환 계획 수립 등 요구

* Migrating to Post-Quantum Cryptography (M-23-02)

- ▶ 국가안보실(NSA), 「국가안보용 상용 알고리즘 체계*('22년)」 발표 및 국가안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 방향 제시

* Commercial National Security Algorithm Suite 2.0(CNSA 2.0)

- 국립표준연구소(NIST), 「연방정보처리표준*('24년)」 발표를 통해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표준 확정 및 공공·민간 부문 적용을 위한 기술 기준 제공

*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Publications (FIPS 203, 204, 205)

■ (EU) 집행위원회 권고와 협력체계를 통해 회원국 간 조율된 양자내성암호 전환 로드맵 제시 및 공동 대응 기반 강화

- ▶ EU 집행위,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위한 조정된 이행 로드맵 권고*('24년)」 발표 및 회원국이 국가 전략, 이행 일정, 거버넌스 체계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 공공서비스 및 핵심 인프라 보호가 주요 대상

* Recommendation on a Coordinated Implementation Roadmap for the Transi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 EU NIS 협력그룹, 「양자내성암호 전환 이행 로드맵*('25년)」을 통해 '26년 전환 착수, '30년까지 핵심 인프라 우선 전환 등을 목표로 구체적 일정과 단계별 이행방향 제시 및 회원국 간 공동 대응 및 정책 정합성 확보 강조

* Coordinated Implementation Roadmap for the Transi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환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 제시 및 장기적 전환 전략 추진

- ▶ NCSC, 「양자내성암호 전환 일정 가이드라인('25년)」을 통해 자산 식별('28년), 우선 시스템 전환('31년), 전면 전환('35년) 등 단계별 이정표 제시 및 조직 단위의 준비·이행·완료 단위 구분

* Timelines for Migra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2025

-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장기적 구조 전환 과제로 규정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조기 준비 필요성 강조

■ (중국) 국가 차원의 양자기술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및 산업 적용 기반 확보 추진

- ▶ 「제14차 5개년 계획('20년)」 및 「제15차 5개년 계획('25년)」을 통해 양자기술을 중점 분야로 포함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적용 추진*

* 14th Five-Year Plan 및 15th Five-Year Plan

- 최근에는 양자내성암호 관련 국가표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에너지 등 분야에서 적용 논의 진행 중(Reuters, 2026.3.19.)

■ (한국) 정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시범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공공 및 산업 분야 적용 기반 단계적 확대

- ▶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6년)」에서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및 표준 주도권 강화를 목표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에너지·의료·행정 분야 적용 후 통신·금융·교통·국방 등 주요 산업으로 확대 추진('25~'26년)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공개키 기반 암호체계의 중장기 보안 한계가 제기되면서 암호체계 전환 필요성이 확대 중

- ▶ 공개키 암호체계는 소인수분해 등 특정 수학적 문제의 계산 난이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양자컴퓨터 발전 시 해당 구조의 취약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따라 장기 데이터 보호 및 미래 위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암호체계 적용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

■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기존 정보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장기적·단계적 이행이 전제되는 과제

- ▶ 암호기술은 인증, 통신,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어 전환 시 영향 범위가 크며 단기간 내 일괄 적용이 어려운 구조
 - 이에 따라 자산 식별, 우선순위 설정, 단계적 전환 등 장기적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특징
- ▶ 미국은 표준과 전환 지침을 병행하고, EU 및 영국은 로드맵과 일정 제시를 통해 전환 기준을 구체화
 - 주요국은 암호 자산 식별, 전환 계획 수립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공통된 접근 방식 확인

■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국가 기술 전략 및 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며 국제표준·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양자내성암호 전환이 정책 이행 단계로 진입 중

- ▶ 중국은 국가계획을 통해 양자정보기술을 중점 분야로 포함하고, 한국은 양자 관련 종합계획과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적용 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가별 정책과 연계 중
 - 관련 정책 및 분석에서는 양자기술이 디지털 보안 및 산업 경쟁력과 연계된 분야로 인식되는 흐름 확인(CSIS, 2026 등)
- ▶ 미국 NIST의 양자내성암호 관련 표준 확정, EU의 로드맵, 영국의 단계별 일정 제시 등은 암호체계 전환의 기준과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 및 주요국 정책을 반영한 단계적 전환 체계 구축 필요

- ▶ 국제적으로 표준(FIPS), 전환 지침, 로드맵 등이 제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암호 자산 식별, 전환 우선순위 설정, 단계적 이행 계획 수립 등 전환 기반 마련 필요
 -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검증체계 구축, 산업 지원 등을 연계하는 정책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

- 과기정통부. (2026.1.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2026.).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
- 美 NIST. (2024).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Publications (FIPS 203, 204, 205).
- 美 NIST. (2025.12.11.). Post-Quantum Cryptography Project
- 美 The White House. (2022.5.4). Memorandum on Promot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Quantum Computing While Mitigating Risks to Vulnerable Cryptographic Systems (NSM-10)
- 美 OMB. (2022.11.18). Migrating to Post-Quantum Cryptography (M-23-0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美 NSA. (2022.9.7.). Commercial National Security Algorithm Suite 2.0 (CNSA 2.0).
- European Commission. (2024.4.11.). Recommendation on a Coordinated Implementation Roadmap for the Transi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 EU NIS Cooperation Group. (2025.6.23.). Coordinated Implementation Roadmap for the Transi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 英 NCSC. (2025.3.20.). Timelines for Migra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 英 NCSC. (2025.3.20.). Setting Direction for UK Migration to Post-Quantum Cryptography.
- 中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3.). The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ate Council.
- 中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10.). Recommendations for the 15th Five-Year Plan. State Council.
- Laurie Chen. (2026.3.19.). China likely to have standards for post-quantum cryptography in 3 years, expert says. Reuters.
- OECD. (2023). Quantum Technologies and Policy Outlook.
- CSIS. (2025.1.). CSIS Commission on U.S. Quantum Leadership.

저자 소개

김수연 | syekim23@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AI 거버넌스, 핵심·신흥기술 및 규범, 기술혁신·보호, 수출통제, 국제표준이다. 주요 연구로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경제안보리뷰 25-4호(2025) 「美 우주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4-22호(2024), 「4차산업에서 재료와 표준」(2023), 「수출통제총람」(2021, 2018)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Degradation behaviours of Fe-doped La_{0.8}Sr_{0.2}CoO_{3-δ} by thermal stress,” *Advances in Applied Ceramics* (2018) 등이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

최용호 전문관

1. 배경

-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결 이후, 美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세 복원 시도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 관세 관련 주요 사법 쟁점은 『경제안보 Review』 25-10호 참조(최용호 2025) / 판결내용과 美 행정부 대응, 관세 환급 등 관련 쟁점은 『경제안보 Review』 26-4호 참조(최용호 2026)

- ▶ 美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결(2026.2.20)
- ▶ 美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122조에 근거한 일시적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301조 절차 개시 예고**(2026.2.20.)
 - 미국 무역대표부(USTR) Greer 대표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산업 과잉생산 능력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디지털 기업·상품·서비스 차별, ▲디지털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등 주요 우려 분야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

- 美 USTR,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2026.3.11.) 및 ▲강제노동(3.12.)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협의·의견수렴 절차 본격적으로 개시

*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Title III, chapter 1, section 301 ~ 310의 내용을 통상적으로 '301조'로 지칭

- ▲미국 통상법 301조의 주요 내용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정책 동향 등 분석 필요

2. 美 무역법 301조*의 주요 내용

* 19 U.S.C. § 2411 ~ § 2420

- (목적) 미국의 ▲무역 협정상 권리 보호 및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발동 요건) USTR의 의무적 조치(mandatory action)와 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로 구성

- ▶ (의무적 조치) ▲ 미국의 무역 협정상 권리 부정 또는 ▲ 외국의 조치가 무역 협정 위반하거나 미국의 협정상 이익 박탈 또는 ▲ 외국의 조치가 부당(unjustifiable)하고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USTR은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

*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위반 또는 국제법상 권리와 불일치

- ▶ (재량적 조치) 외국의 조치가 비합리적(unreasonable) 또는 차별적(discriminatory)이고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burdens or restricts)적이며 미국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STR은 조치 가능

- (unreasonable)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에 위반되거나 불일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치가 불공정하고 불형평한(otherwise unfair and inequitable) 경우*

* (예시) ▲ 기업 설립 기회의 박탈 ▲ 비차별적 시장접근 기회의 박탈 ▲ 노동권 미보장,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지속

- (discriminatory) 미국의 상품·서비스·투자 등에 대해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또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가 부인되는 경우

■ (절차) USTR의 조사 후 대통령 명령으로 보복 관세 등 301조 조치 발동

- ▶ (조사 개시) 청원(petition) 또는 USTR 직권(self-initiation)을 통해 301조 절차 개시 가능
 - (청원) 이해관계인(any interested person)이 USTR 청원 →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 연방관보 공고 및 의견 제출, 공청회 기회 제공
 - (직권) USTR의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개시 결정 후 30일 내로 조사 개시
- ▶ (타국 협의) 조사 개시와 동시에 관련 상대 국가와 불공정 행위 중단 또는 미국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협의 진행
- ▶ (판정) 조사 및 타국 협의 개시 12~18개월* 이후에도 상대 국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USTR은 보복 조치 시행 여부 결정
 - * 무역 협정 관련 사안일 경우 18개월, 그 외에는 12개월
 - 조사를 바탕으로 ▲ 권리 침해 또는 문제 행위 존재 여부 ▲ 존재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결정
- ▶ (조치 이행) 원칙적으로 USTR은 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 / 다만, 최대 180일까지 조치 이행 연기 가능
 - 상대 국가의 시정조치 등을 USTR이 지속 모니터링
- ▶ (수정·종료) 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USTR은 301조 조치를 수정·종료 가능
 - 수정·종료 전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조치 발효 후 4년 경과 시 만료 / 만료 시 추가 조사 후 연장 가능

■ (권한) 301조 요건 충족 시 USTR은 관세(관세율 상한 無) 부과를 포함하여 무역 규제, 무역 특혜 취소 등 광범위한 무역 보복·시정 권한 보유

- ▶ (수단) ▲ 무역 협정상 양허·혜택의 정지 ▲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 서비스 제한 및 수수료 부과* ▲ 구속력 있는 합의(문제 행위의 제거, 보상 등) 체결 등

* (예) 對中 해운·물류·조선 분야 301조 조사 이후 입항수수료 부과(25.10월)

- (관세) 관세율 상한에 대한 제한 별무

- ▶ (대상) ▲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조치 적용 가능 ▲ 문제가 된 품목 외 다른 품목·산업에 대해서 조치 가능 ▲ 특정 경제부문 전체 겨냥 가능

3.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 USTR,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협약·의견수렴 절차 개시*(3.11)

*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Certain Economie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 USTR 발표 자료(과잉생산)의 주요 내용

- ▶ (조사 배경)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정부 개입 등을 통해 수요와 유리된 구조적 과잉생산 역량 확충 → 對美 흑자 지속 및 美 산업^{*} 피해

*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제품, 에너지 제품, 유리, 공작기계, 기계류, 비철금속, 제지,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장비 등을 예시로 제시

- (목적) 과잉생산 관련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여부 및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 개시

- ▶ (대상 국가) 중국, EU, 일본, 한국 등 16개국^{*}

*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 (한국) 대규모·지속적 무역흑자는 한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의 증거

- 한국은 전자장비,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조선 및 해양 선박의 수출로 전세계적 무역 흑자 유지 중 / 아울러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분야 감산 필요성 인정

- ▶ (의견수렴) 서면 의견서 등 접수(3.17~4.15) / 공청회 개최(5.5)

4.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 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협약·의견수렴 절차 개시*(3.12)

*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 USTR 발표 자료(강제노동)의 주요 내용

▶ (조사 배경) 전세계적 강제노동* 지속 → 인위적 낮은 비용의 물품 생산으로 시장 교란, 결과적으로 美 산업 및 노동자 피해

* 처벌의 위협하에 자발적이지 않는 노동·서비스를 강제로 하는 것 / USTR은 미국법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국제법도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목적)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여부 및 미국 상위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 개시

▶ (대상 국가)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상위 60개 교역국*

*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를 채택하였으나, 채택과 효과적 집행 모두를 하는 국가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

▶ (의견수렴) 서면 의견서 등 접수(3.17~4.15) / 공청회 개최(4.28)

5. 분석 및 평가

■ 美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 수준의 복원을 위한 美 행정부의 301조 수단 활용 본격화

▶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일차적으로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평가

- 122조 관세가 150일까지 15%까지만 부과 가능한 한시적 성격을 가지는바, 122조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301조 절차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기존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표

- 301조를 既체결한 무역합의의 이행을 압박하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 전망

▶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301조 조사가 새로운 요구를 담은 새로운 통상 압박의 신호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임현우 2026)

- 아울러 ‘슈퍼 301조’*의 부활 가능성에도 주목(송고 2026)

* 슈퍼 301조는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것으로 USTR이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압박하고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 1989-199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다는 전망 제기

- ▶ 또한 301조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과잉생산 조사의 경우, 미국의 발표자료는 상대 국가의 무역흑자 존재 자체를 과잉생산의 증거로 간주(최승진 2026) / 대미 무역적자국인 싱가포르를 조사 대상이나 무역흑자국인 캐나다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관성 결여
 - 강제노동 조사의 경우, 조사 일정에 비해 조사 대상(60개국)이 지나치게 많고, 강제 노동 금지 법안을 시행 중인 국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반면, 강제노동법 집행 수준이 낮은 국가는 불포함 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Bao 2026)

■ 디지털 분야 차별, 의약품 등 여타 분야의 추가적인 301조 절차 개시 가능성 주목

- ▶ 그리어 USTR 대표가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디지털 기업, 상품, 서비스 차별, ▲디지털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등 다른 분야도 301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향후 추가 301조 절차가 개시 될지 여부도 지속 관찰 필요

참고문헌

- 김슬기. (2026.3.9.). “쿠팡 美투자사 “USTR에 한국 301조 조사 청원 철회””. 『매일경제』 .
- 송고. (2026.3.12.).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표적 통상 무기…한국도 여러번 겨냥”. 『연합뉴스』 .
- 임현우. (2026.3.23.).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미 “16개국 조사”…새 관세 도입 ‘빌드업’”. 『한국경제』 .
- 최승진. (2026.3.12.). “한 조사이유 설명하며 “무역흑자가 과잉생산 증거”…디지털 관련 추가조사 시사”. 『매일경제』 .
- 최용호. (2025.5.23.).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경제안보 Review』 25-10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최용호. (2026.2.27.).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경제안보 Review』 26-4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Bao, Anniek. (2026.3.12.). “U.S. Launches Fresh Section 301 Probes into 60 Economies over Forced-labor Trade Practices.” CNBC.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6.3.11.)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Certain Economie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6.3.12.)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 정책: 틱톡 규제의 사례”(글로벌정치연구, 2025),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간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이승주 편. 2020,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경제안보리뷰, 23-7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6.2.18.~2026.3.4.)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미 에너지정보청(EIA),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지속 전망(3.10)

▶ (주요 내용) 미 에너지정보청, 중동 내 일부 생산 시설 폐쇄 및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 운송량 감소에 따라 향후 2개월간 \$95/b 이상의 고유가 유지 전망 발표*(3.10)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6.3.10)

- (원유) 브렌트유 현물 가격은 올해 초 대비 약 50% 상승, 3월 9일 배럴당 \$94를 기록,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석유 운송량 감소에 따라 향후 고유가 지속 전망
- (LNG) 호르무즈 해협의 LNG 흐름 감소로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가격 상승 추세 / 반면 미국 내 가스 가격은 온화한 기후 및 재고 증가로 인해 기존 수준 유지
- (석탄) 글로벌 LNG 공급망 차질로 인한 발전용 석탄 가격 상승 전망 / LNG 거래 중단 상황 지속시 미국의 석탄 수출 확대 전망

▶ (평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여파로 당분간 생산 감소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일각에서는 해협 폐쇄가 수개월 지속될 경우 \$135/b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 / 이에 미 행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연방 휘발유세 유예, 에너지 수출 제한, 러시아 제재 완화 등의 수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평가
- 미 에너지정보청은 분쟁 완화 가정시, 2026년 3분기 \$80/b 미만, 연말에는 \$70/b 수준까지 하락하며 2027년 평균 \$64/b로 전망

출처: EIA(3.10.), 연합뉴스(3.11.), NYT(3.9.)

■ 美 국제무역법원 IEEPA 관세 환급 명령(3.4)

▶ (주요 내용) 美 국제무역법원(CIT), 정산(liquidation)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신고 건*에 대해 IEEPA 관세 즉각 환급 명령(3.4.)

* ① 未정산 건 IEEPA 관세 제외하고 정산 ② 정산 未확정 건 IEEPA 관세 제외하고 재정산

- 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업자가 IEEPA 관세 위법 판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
- 상기 명령에 대해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규모 환급 규모 감안 시 즉각 환급은 불가하며, 45일 내 자동화 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CIT는 환급 명령을 일시 정지하고 CBP에 이행 경과 보고서 제출 요구

- ▶ (평가) 주요 언론은 美 법원의 환급 명령으로 관세 환급 절차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美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 등 법적 공방 지속 여부 주시 필요성 지적
 - 이미 정산 확정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적용될지 아직 불분명

출처: AP News(3.5.), 중앙일보(3.5.), Politico(3.6.), 연합뉴스(3.7.), 한국경제(3.8.) 등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복합 쇼크 위기 고조(3.13.)

- ▶ (주요 내용)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부터 비료·헬륨·금속까지 원자재 전방위 공급 충격
 - 유가: 이란 신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봉쇄 지속 선언에 유가 100달러선 재돌파
 - * 3.13일 종가 기준 WTI 4월 인도분 선물 \$95.73(+9.7%),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100.46(+9.2%)
 - 비료·식량: 전 세계 해상 비료 교역의 약 30%가 호르무즈 통과, 미국 내 요소 가격 2월 말 대비 25% 이상 급증, 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 비료 공장 가동 중단, 북반구 파종기(3~5월) 직전 공급 충격으로 식량 가격 상승 우려
 - 헬륨·브롬가스: QatarEnergy, LNG 생산 중단으로 헬륨 공급 차질(전 세계 헬륨의 약 30% 생산), 이스라엘 브롬가스 수급도 위태로운 상황 → 반도체 노광 장비 및 MRI 장비 등 수급 영향 가시화
 - 금속·석유화학: 알루미늄 가격 4년만에 최고치 기록, 나프타(사우디·쿠웨이트), 콘덴세이트(카타르, UAE) 수급 비상 →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합성섬유 다운스트림 연쇄 타격 우려
- ▶ (평가) 유가 상승 외 반도체·석유화학 소재 공급망 차질이 중첩되는 이중 리스크 노출, 분쟁 장기화 시 고유가 기조 지속 및 산업 경쟁력 전반 하강 불가피
 - IEA 32개국 비축유 4억 배럴 공동 방출(韓 할당 2,246만 배럴) 합의로 단기 완충효과 기대

출처: Carnegie Endowment·Reuters·WSJ(3.12.), 뉴시스·동아일보(3.13.) 등

■ 호르무즈 해협 위기 여파로 납사 공급 차질··韓·日 석유화학 산업 부담 가중(3.16.)

- ▶ (주요 내용)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 차질로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naphtha)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한국·일본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차질 우려가 확대
 - 납사 가격은 지난달 이후 약 50% 상승(톤당 875달러)했으며, 공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 감축 및 가동률 축소에 돌입*
 - * 여천NCC는 공급 불가항력 선언하고 생산을 최소 가동 수준으로 축소/ 롯데케미칼·LG화학도 일부 제품에 대한 계약 이행 차질 가능성 고객사에 통보/ 일본 미쓰비시케미칼·미쓰이화학도 생산 감축
- ▶ (평가) 한국·일본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확충에 따른 공급 과잉, 원료·전력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납사 품귀 현상이 겹치며 업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평가

출처: Financial Times(3.13.), 헤럴드경제(3.16.) 등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2.26.	[리튬] 2026년 전 세계 리튬 수요, 약 200만 톤 LCE* 도달 예상(국신증권) * Lithium Carbonate Equivalent
	3.5.	[양회] 리창 국무원 총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개막식에서 '2026년 정부업무 보고' 실시 : ▲경제 성장 목표 ▲재정정책 ▲소비 촉진 정책 ▲통화정책 등 제시
	3.6.	[중동상황]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가능성 제기(차이렌서) : 에너지, 화학원료 등 기초 원자재 수송 차질이 화학, 의류,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 공급망 연쇄 충격 초래 가능
	3.6.	[GDP] 발개위 주임, 올해 GDP 증가분 6조 위안 초과 전망
	3.8.	[정책]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 109개 중대 프로젝트 제시 : ▲신질생산력 발전 견인 ▲현대적 인프라 체계 구축 ▲도농 통합 발전 촉진 ▲민생 보장·개선 ▲녹색·저탄소 전환 추진 ▲핵심 분야 안전 보장 등 분야 포함
	3.10.	[수출입] 해관총서, 26년 1~2월 수출입 실적 발표
	3.12.	[자동차] 양회 기간 동안 자동차 업계 키워드는 '저공' 및 '지능' : 양회 대표들, 저공,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 자율주행 등 자동차 분야 관련 핵심 키워드 언급
	3.13.	[해양] 자연자원부, '2025년 중국 해양경제 통계공보' 발표 : 2025년 전국 해양 생산총액 11조 1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3.16.	[관세] 상무부, 미국의 '공급과잉(3.13)' 및 '강제노동(3.16)' 관련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 발표
미국	3.3.	[정상회담] 미국-독일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D.C.)
	3.3.	[디지털] 하원 공화당 의원, USTR에 美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 대우 해결 촉구 서한 발송 : 美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에 대한 조치 촉구
	3.4.	[관세] 국제무역법원(CIT),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세가 납부된 특정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 ①미정산 수입신고 건은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 ②정산이 확정되지 않은(not final) 경우,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재정산
	3.5.	[관세] 24개 주(州) 주지사 및 법무장관들, 122조 관세 관련 소송 제기 : ▲국제수지 개념 ▲비차별 원칙 등 근거, 122조 관세 집행정지 및 122조로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 요청
	3.5.	[관세] 의회예산처(CBO), IEEPA 관세 종료가 美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 ▲IEEPA 관세 종료로 미국의 실효관세율(15%→7%) 하락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해 2026-2036 간 세수 약 1.6조불 감소 및 추가 부채 이자 비용 약 0.4조불 증가
	3.6.	[사이버전략] 백악관,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 발표 : (6대 정책 축) ▲적대국 행동 억제 ▲상식적인 규제 촉진 ▲연방정부 네트워크 현대화·보안강화 ▲핵심 인프라 보호 ▲핵심·신기술에서의 우위 유지 ▲인재·역량 구축
	3.6.	[관세] 국제무역법원(CIT), 관세국경보호청(CBP)에 3.12.까지 IEEPA 관세 자동 환급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요구
	3.9.	[쿠팡] 쿠팡 투자자(Greenoaks, Altimeter),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청원 철회 발표

국가	일자	내용
미국	3.11.	[과잉생산] USTR, 한국, EU, 일본, 중국 등 16개 경제주체* 대상 과잉생산능력 301조 조사 개시 *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3.11.	[관세] 민주당, '122조 관세 폐지 법안(3.11)' 및 '122조 관세 대상에서 소규모 기업 제외 법안(3.10)' 발의 등 122조 관세에 대한 대응 움직임 본격화
	3.11.	[선박]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걸프해역 상업 운송 재개를 위해 20억불 규모 해상재보험 제공 계획 발표
	3.12.	[강제노동] USTR, 한국 등 美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 발표
	3.12.	[관세] 국제무역법원(CIT), 122조 관세 소송 심리일(4.10) 발표 : 25개 州가 제기한 소송 및 민간 수입업자가 제기한 소송 두 건 동시 심리
	3.12.	[관세] 관세국경보호청(CBP), 중간보고서를 통해 신규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 개발 현황 및 도입 계획 공개
	3.12.	[핵심광물] 행정부, 일본 및 EU와 핵심광물 무역협정(ATCM) 협상 계획 수주 내 발표 예정 (Bloomberg)
	3.13.	[선박] 행정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항만 간 화물 운송에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Jones Act 30일간 면제 검토 중(Bloomberg)
	3.13.	[무역협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301조 조사로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서명을 수개월 미룰 수 있다는 언론 보도(Reuters)
	3.13.	[원산지] Trump 대통령, 원산지(Made in America) 허위 표시 관련 행정명령 발표
	3.13.	[무역협정] USTR, 미-에콰도르 무역협정 체결 발표
	3.16.	[미중관계] Trump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언급
	3.16.	[AI] 상무부, 미국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 이행 위해 업계 주도 컨소시엄 공모 발표(3.16)
3.16.	[미중관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파리지 개최(3.15-16)	
일본	2.25.	[우주] 경산성·관계부처, '우주전략기금 기본 방침' 개정
	3.4.	[반도체] 캐논, 日 대기업 중 처음으로 라피더스에 생산 위탁(닛케이)
	3.4.	[대미투자] 차기 대미투자 프로젝트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을 사용한 원전건설 프로젝트 및 ▲Falcon Copper의 신규 구리제련소 건설 거론
	3.5.	[대미투자] 대미 투융자 제2호, 원전 및 구리 정련 시설이 후보(닛케이·TBS·아사히) : 3.19일 예정 일미 정상회담 시 발표 목표
	3.5.	[협정] 일-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 자동차·철강 등 관세 철폐
	3.6.	[정상회담] 일-캐 정상회담 개최 : ▲경제안보대화 신설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배터리 공급망·AI·양자 등 첨단 분야 대응 협력 등 합의
	3.6.	[희토류] 희토류 이트륨 가격 1년 새 140배 급등(닛케이) : 일본 대상 수출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세 가속화
	3.6.	[자동차] 혼다, 미국 생산 차량 역수입 계획(닛케이) : 2026년 후반부터 미국 생산 차량을 일본에 역수입해 판매 계획
	3.9.	[희토류] 정부, ODA를 통해 말레이시아 희토류 채굴 기술 지원 계획에 제련 기술 지원 계획(닛케이)

국가	일자	내용
일본	3.10.	[전략분야] 총리, 제3차 성장전략회의에서 기존에 발표한 17개 전략 분야에서 새롭게 61개 제품·기술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 *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양자컴퓨팅
	3.10.	[반도체] 마쓰호은행, 후쿠오카에 일본-대만 기업 협력 지원 반도체 거점 신설 계획 / 미쓰이미토모 은행, 반도체 산업 과제 해결과 금융 지원 추진(닛케이)
	3.11.	[자동차] 日 금형기업의 약 80%가 최근 1년간 가격 인상 및 향후 6개월 내 추가 인상 검토 중 (닛케이)
	3.12.	[경제안보] 경제안보추진본부 합동회의 개최 :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논의
	3.12.	[희토류] 자민당 해양개발특위,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 촉진을 위한 채굴 전용선 확보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닛케이)
	3.13.	[AI] 정부, 3월 말 발표 예정인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AI 에이전트 및 피지컬 AI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간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 도입 요구(닛케이)
	3.15.	[AI] 총무성, G7 AI 프렌즈그룹 도쿄 개최 및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합의
	3.13.	[반도체] 로움·도시바, 데이터센터용 전력반도체 통합 협상 개시(닛케이)
	3.18.	[일미관계] 日 언론, 日 총리 방미 관련 ▲핵심광물 행동계획 ▲해양자원 개발 ▲조선 기술 투자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등 경제 분야 성과 사업 전망
EU	3.4.	[산업] 집행위, EU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공식 제안 : (주요 내용) ▲저탄소 및 역내산 요건 규정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산업가속화구역 지정 등
	3.4.	[관세] 유럽의회, 대미 관세인하 입법안 절차 진행 보류상태 유지 결정 : 3.17. 상임위 표결 진행 여부 재논의 예정
	3.4.	[항만] 집행위, EU 항만 전략 발표
	3.12.	[탄소] 집행위 조세총국, '26년 수입분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27.2월부터 판매) 발표 일정 발표 : ▲1분기 가격 4.7. ▲2분기 7.6. ▲3분기 10.5. ▲4분기 '27.1.4. 예정
	3.10.	[관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 EU 국제무역위(INTA) 의원을 대상으로 EU 대미 관세인하 입법안 관련 비공개 브리핑 실시 및 조속한 처리 촉구
	3.11.	[역외보조금]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 평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요약 보고서 공개
	3.11.	[산업] 집행위, 'EU 산업가속화법'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3.11-5.6) 개시
	3.13.	[반덤핑] 집행위, 한국-멕시코산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에 따른 잠정관세율 사전 통보
	3.17.	[관세] 의회 정치 그룹 대표, 대미 관세인하 입법안 표결 절차 재개 합의
대만	3.6.	[양자] 국가과학기술위, 'AI 신 10대 건설 - 고속 양자컴퓨팅 국가 전략' 발표
	3.13.	[관세] 행정위,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상호 무역협정 협상 성과 반영될 것이라 설명
	3.13.	[반도체] TSMC, 에너지 상황 면밀히 주시 중으로 중동 전쟁 속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확대

국가	일자	내용
영국	3.12.	[비료]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이 합성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 황, 질소 수급에 영향
	3.16.	[철강] 정부, 철강 산업 전략 발표(3.19)를 통해 철강 관세 50%로 인상 예정이라 언론 보도 (Politico)
캐나다	3.12.	[인프라] Carney 총리, 약 400억 캐불 이상 규모의 북극 방위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3.15.	[정상회의] Carney 총리, 노르웨이 방문(3.13-15) 및 ▲캐-독-놀 3국 정상회의 ▲캐-놀 정상회담 ▲캐-노르딕 정상회의 등 개최
네덜란드	3.17.	[해운] 네덜란드 선박 약 100척 페르시아만 계류, 유럽 최대 항만 로테르담 영향 예상
	3.17.	[항공] 중동-유럽간 항공화물 운송 약 70% 감소 및 운임 50~100% 상승
	3.17.	[무역] 對중동 수출 비중 약 3% 수준이나 농식품·화학, 화학·건설자재 등 업종 취약
독일	3.1.	[잠수함] TKMS, 캐나다 CAE社와 캐나다 미래 잠수함 역량 지원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
	3.13.	[독놀관계] 메르츠 총리, 노르웨이 방문 예정(3.12-13) : ▲독-놀 양국 관계 ▲우주 및 방산 협력 ▲유럽 및 NATO 내 협력에 대해 협의 예정
	3.13.	[경제] 산업협회(BDI), 상공회의소(DIHK) 등 경제단체, 메르츠 총리에게 신속한 경제 구조개혁 요구 및 압박 강화(tagesschau)
	3.13.	[화학] 독일 화학 산업, 2025년 생산과 매출이 계속 감소하며 침체 지속(tagesschau)
	3.13.	[자동차] 폭스바겐, 2025년 영업 이익 전년대비 반토막(Handelsblatt)
	3.13.	[자동차] BMW, 3년 연속 이익 감소 : 중국 판매 부진·미국 관세 영향(Zeit)
	3.13.	[자동차] 다임러 트럭, 순이익 34% 급감 : 북미 수요 부진 및 미국 관세 영향(Handelsblatt)
폴란드	3.3.	[방산] 폴란드-슬로바키아 방위산업 협의회 개최
호주	3.11.	[희토류] 호주 라이너스社, 日 JARE社와의 공급 계약 갱신 및 시세 변동과 상관없는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닛케이)
	3.13.	[AI] 호주 AirTrunk社, 2030년까지 일본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에 약 80억 달러 투자 계획 (닛케이)
스위스	3.6.	[무역합의] 정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지속 의사 표명 : 25.11월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에 기반한 협상 지속 예정
멕시코	3.5.	[USMCA] 경제부, USMCA 재검토 준비 1차 협의 3.16일주 개최 발표
인도	3.4.	[조선] 타밀나두주,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재활용 산업 육성 정책 발표
	3.13.	[요소] 대중국 요소 수입량 증가 : '25.4월~'26.2월 기간 동안 중국에서 212.4만 톤 요소 수입해 최근 3년 중 최고 수준 기록 (Economic Times)
	3.16.	[수출]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도 전체 수출 물량 약 70% 영향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3.5.	[석유제품] 발개위, 정제 석유제품 수출 일시 중단 요구(Bloomberg)
	3.16.	[수소에너지] 공업정보화부·재정부·국가발개위, '수소에너지 종합 응용 시범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미국	3.4.	[원유] Bessent 재무장관, 유가안정방안* 발표 : 동 방안 발표 직후 시장 불안 일부 해소 및 국제유가 하락세 전환 * ▲원유 운반선·화물선에 대한 해상보험 및 재정보증 제공 ▲필요시 美 해군의 유조선 호위 ▲인플레이션 대응 프로그램 마련 및 단계적 시행
	3.4.	[원자력] 테라파워,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최초로 건설허가 획득
	3.4.	[전력] 백악관,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서명 : (주요 내용) ▲신규 전원 확보 ▲전력망 인프라 비용 부담 ▲별도 요금체계 부담 ▲지역 투자 ▲전력망·지역 회복력 기여
	3.5.	[원유] Bessent 재무장관, 중국에 러시아산·이란산 원유 수입 축소 요구 검토(WSJ)
	3.5.	[원유] Bessent 재무장관, 인도 정유사에 이미 선적된 러시아 원유 구매를 허용하는 30일간의 한시적 제재 유예 발표
	3.9.	[원유] Trump 대통령, 이란 공습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 해제 가능성 시사
	3.11.	[원유] 에너지부, 전략비축유 1억 7천 2백만 배럴 방출 계획 발표
	3.16.	[유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제한되면서 배럴당 100불 상회 지속
	3.17.	[석유] 에너지부, 가동 중단된 캘리포니아 연안 원유생산·수송 설비 복원 지시, 동 조치 통해 하루 약 5만 배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
	3.17.	[석유] 에너지부, 전략비축유 8,600만 배럴 규모의 1차 방출 추진 발표
3.17.	[LNG] 에너지부, 비FTA 체결국 대상 LNG 추가 수출 승인	
일본	3.11.	[원유] 총리, 원유 가격 급등 관련 국내 대응 조치 지시 : 원유 가격 억제 조치 및 비축유 방출 조치 결정
	3.15.	[에너지안보] 경산성,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각료급 비즈니스포럼' 미국과 공동 개최(3.14-15)
	3.15.	[원자력] 히타치, 미국 GE Vernova와 동남아 소형모듈원전(SMR) 전개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EU	3.11.	[에너지] EU 집행위, 에너지 패키지* 발표 * (구성) ▲시민 에너지 패키지 ▲청정에너지 투자전략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략
대만	3.9.	[LNG] 정리진 행정원 부원장, 물가안정 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물가 대응 방안 점검 : 3-4월 LNG 공급 안정 및 6월부터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추진
	3.13.	[원자력] 정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추진 : 제3원전 2028년 재가동 목표
영국	3.9.	[비축유] 재무장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 전략 비축유 방출 지지 입장 표명
	3.12.	[LNG] 중동 상황 격화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일자	내용
캐나다	3.12.	[원유] IEA 회원국 비축유 방출 합의 관련,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석유비축이 없는 국가로, 대신 국가 에너지 산업 운영 조정 및 공급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 검토 중(에너지·천연자원부)
호주	3.4.	[석유] 에너지장관, 호주 유류 비축량 발표 및 사재기 자제 당부 : 휘발유 36일, 디젤 34일 및 항공유 32일
	3.10.	[석유] 에너지장관, 정유·유통업계 회동 : 유류 수급 점검 및 특정 지역(농업·광업 중심지)의 디젤 부족 대응 논의
	3.10.	[석유] 재무장관, 유류세 감면 불가 입장 표명 및 시장 감시 강화 방침 재확인
	3.11.	[석유] 재무장관, 국내 유류 시장 감독 강화 지시(3.3)-경쟁·소비자위원회 및 업계에 관련 정보 요청(3.6)-과징금 부과·주간 시장 모니터링 개시(3.11)
	3.12.	[석유] 유류 공급 확대·가격 안정화 위해 석유연료 품질 기준 60일 한시 완화
	3.12.	[석유] 국제에너지기구(IEA), 비축유 방출 관련 호주 참여 방안 최종 결정 중 : 확정된 물량 국내 공급 예정
	3.18.	[연료] 호주 연료 비축량 36일치 불과(AFR)
	3.17.	[석유] 대형 정유 생산·수입업체에 적용 중인 최소 재고 의무 제도(MSO) 한시적 완화 및 민간 정유 의무 비축량 최대 20% 반출 조건부 허용
	3.17.	[석유] 에너지장관, 수요업계(농업·자원·운수·물류 등) 회의 : 수급 점검 및 사재기 중단 촉구
	3.18.	[휘발유] 3.8.주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 가격 리터당 2.195호불로 전주 대비 0.215호불(+10.9%) 상승
네덜란드	3.11.	[석유] 네덜란드 휘발유 평균 가격 리터당 2.05유로(2.27)→2.172유로(3.9)로 약 5.5% 상승, 정부는 전략비축유 약 20%인 536만 배럴 방출 계획 발표
	3.17.	[가스] 네덜란드 TTF 4월 인도분 가스 선물가격 31.96유로/MWh(2.27)→50.89유로/MWh(3.16)로 약 59.2% 상승 및 가스 비축률은 10.5%(3월초 기준)
독일	3.13.	[에너지] 중동사태 이후 독일 연료 가격 규제 강화 및 약 250만 톤 규모 석유 비축분 방출 계획
	3.13.	[석유] 정부, 주유소 가격 인상 '하루 한 번' 제한 추진(Frakfurter Rundschau)
	3.13.	[에너지] 독일 내 1,700개 기업,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호소문 서명 : 네트워크 패키지 및 건물 개조법 개정안을 문제로 지적(Spiegel)
	3.13.	[연료]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및 휘발유 2.50유로 인상 가능
	3.13.	[원유] '25년 독일 원유 수입량 중 5.1% 중동 산으로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 대해 긴장 중
	3.13.	[에너지]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 REW CEO, 유럽 에너지 비용 상승 경고(Handelsblatt)
스위스	3.11.	[연료] 스위스 경유 가격 평균 8.6% 상승 및 휘발유 가격 안정세(TCS)
오스트리아	3.11.	[정책] 정부,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주유소 연료 가격 인상을 매주 3회(월, 수, 금)로 제한
	3.14.	[석유] 정부,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 결정에 동참 및 원유 325,000톤 분량 방출 결정 : 이는 11일치 전략비축유에 해당하는 물량
폴란드	3.11.	[정책] 대통령실 산하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 폴란드 에너지 비용 대응 관련 회의 개최
프랑스	3.11.	[정책] 르코르뉴 총리, 정유 유통업체 '마진 상한제'와 '가격 변동 완화 메커니즘' 검토 지시

	일자	내용
핀란드	3.12.	[석유] 핀란드 현재 평균 5개월 치의 국내 소비량에 해당하는 석유 비축 중
튀르키예	3.6.	[원자력] 튀르키예-캐나다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3.3)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개발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멕시코	3.11.	[정책] 세인바움 대통령, 휘발유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 제도 시행 가능성 언급
	3.13.	[석유] '25년 기준, 원유 163만 배럴/일 생산, 58만 배럴/일 수출 및 100만 배럴/일의 정유 제품(휘발유, 경유 등) 생산
	3.13.	[천연가스] '25년 기준, 45억 큐빅피트/일 천연가스 생산 중이나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61억 큐빅피트/일('23년) 수입 중이며 미국이 전체 수입량의 99% 차지
라오스	3.11.	[정책] 라오스 총리실 장관, 연료 수급 안정화 위해 단기(1~30일) 및 중기(3~12개월) 대응 조치 마련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계획
	3.11.	[정책] 라오스 산업통상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가격 부담 완화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해 리터당 약 200 kip 수준의 가격 인하 조치 시행
말레이시아	3.11.	[정책] 정부, '서아시아 분쟁 영향 및 에너지 안보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내 유가 상향 조정 등 조치 시행
	3.12.	[원유] 말레이시아 원유·LNG 생산국이지만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원유의 약 41% 수입 중 : 수입량의 약 70%를 사우디, UAE 등 중동 지역에 의존
베트남	3.4.	[가스] 베트남가스공사(PVGas), 중동 사태 속 LNG·LPG 가스 공급 안정 상황 확인
	3.4.	[에너지안보] 총리, 에너지 안보 관련 범정부 TF 설치 지시
	3.7.	[LNG]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LNG 발전 프로젝트 공급 차질 우려 제기
	3.11.	[정책] 총리,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TF 구성(3.4) 및 석유가격 안정기금 즉각 활용 지시
인도	3.2.	[우라늄] 인도-캐나다, 우라늄 공급 계약 체결
	3.15.	[LPG]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인도 LPG 운반선 2척 통과(The Hindu)
	3.15.	[에너지] 고알 상공부 장관, 중동 공급 충격에도 인도 에너지 수급 안정적이라는 입장 표명(The Hindu)
인도네시아	3.12.	[원유] 인니 경제조정장관, 최근 美 세브론, 엑손모빌 등과 원유, LNG 공급 관련 MOU 체결 사실 언급
태국	3.9.	[연료] 태국 총리, 자국내 연료 가격 15일간 상한선 유지 발표
	3.6.	[석유제품] 태국 총리, 중동 분쟁으로 인한 자국내 연료 수급 부족 가능성 예방 위해 석유제품 수출 중단 총리령 발표
	3.16.	[석유] 태국 정부, 원유 비축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디젤·휘발유 가격상한유지 발표 : 美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따라 태국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 협상 준비 중
파키스탄	3.7.	[석유] 정부,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리터당 55루피(약 20%) 인상
	3.9.	[정책] 정부, 비상 긴축 계획 발표 : ▲주4일제 및 재택근무 ▲봄방학 및 온라인 수업 ▲공용 차량 운행 중단 ▲급여 반납 등
필리핀	3.10.	[유가] 에너지부, 주유소 판매 가격 약 8-40페소(15-42%) 단계적 인상 발표
	3.18.	[석유제품] 정부, ▲석유제품 가격 순차 인상 ▲유류세 인하 ▲연료 보조금 지급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 대응방안 발표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26-2호 (2026.1.23)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현안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26-3호 (2026.2.6)	분석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이재원
	현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황지현
	현안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안수린
26-4호 (2026.2.27)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최용호
	현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역지력 강화 동향	임산호
26-5호 (2026.3.13)	분석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황지현
	현안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유아름
	현안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임산호
26-6호 (2026.3.27)	분석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김단비
	분석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과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	최용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